

의료기관평가인증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0728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여의도동) 10층
Tel 02-2076-0600 Fax 02-2076-0655 www.koiha.or.kr

의료기관 개선사례 공유 (세탁물관리)
[2024.12. 인증평가본부]

의료기관 개선 및 관리 사례 202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인증의료기관 개선사례 공유 [세탁물 관리]

1. 추진배경 및 목적

| 인증의료기관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기준 준수 미흡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의료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실제 의료기관에서 관리상 혼선이 많은 부분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의 우선순위 순은 아님

2. 인증의료기관 사후관리 현황

| 3주기 중간현장조사를 받은 급성기병원 251개소, 요양병원 248개소('23년 12월말 기준) 분석 결과 '세탁물 관리'조사항목은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모두 충족률이 낮은 하위 3개 조사항목에 해당하였음

〈 3주기 중간현장조사 다빈도 지적사항 〉

급성기병원 (251개소)		요양병원 (248개소)	
조사항목	충족률(%)	조사항목	충족률(%)
11.3 ME2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88.4	8.3 ME8 세탁물을 적절하게 관리한다.	70.6
8.5 ME8 세탁물을 적절하게 관리한다.	90.0	7.2 ME3 보고된 환자안전사건을 분석한다.	78.1
7.1 ME2 의료기관 차원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적격한 자가 있다.	91.6	8.6 ME2 식재료를 관리한다.	79.4

| 의료기관은 의료관련 감염발생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료법」 제16조(세탁물 관리)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에 의거하여 세탁물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함

| '세탁물 관리' 조사항목은 1주기부터 모든 종별 인증기준에 포함되어있던 항목이나, 정확한 수행 및 유지 관리에 혼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3. 세탁물 관리 주요 미흡사항

세탁물 수집

[사례1] 세탁물 수집 장소 별도 구획 미흡
[사례2] 세탁물 분류방법 게시 미흡
[사례3] 세탁물 수집자루 사용 미흡

세탁물 보관

[사례1] 세탁물 보관 장소 출입통제 관리 미흡
[사례2] 세탁물 보관 장소 내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미게시

세탁물 운반

[사례1] 세탁물 운반 용기 소독 미흡
[사례2] 세탁물 처리시설 내 운반 용기 구분 미흡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관리

[사례1] 세탁이 끝난 세탁물 보관 장소의 환경 관리 미흡
[사례2] 세탁한 수집자루를 위탁처리할 세탁물 보관장소에 방치

기타

[사례1] 세탁물 구분에 대한 규정 미비
[사례2] 세탁물 관리에 관한 직원 숙지 미흡
[사례3] 세탁물 처리업무 직원 교육 미이수
[사례4] 세탁물(직원 근무복) 세탁 미흡

4. 의료기관 개선 및 관리 사례

가. 세탁물 수집

〈 인증기준 내용 〉

구분	세부내용
세탁물 수집	• 세탁물 수집 장소 : 다른 시설과 분리된 공간 • 세탁물 분류방법 등에 대한 게시 •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의 분리 수집 • 수집 용기의 적합성 : 세탁과 소독이 쉬운 구조, 오염세탁물은 유색 용기 또는 오염세탁물 표식 등

[사례1] 세탁물 수집 장소 별도 구획 미흡

(문제점) 세탁물 수집장을 개방된 복도에 설치하여 세탁물을 수집함

– (개선1) 세탁물 수집장을 다른 시설과 분리된 별도 공간으로 이동함

· 세탁물 수집 장소를 구획하기 위해 수집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권고하지 않음

– 감염관리 측면에서 볼 때 입원환자의 환의를 수거하여 세탁물 수집 장소로 이동하는 것보다 세탁물 수집자루를 병실로 가져와 즉시 수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므로, 고정된 수집장을 설치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세탁물을 즉시 수거하기 위해 검사실 탈의실에 수집장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함

– (개선2) 의료기관 내 공간이 협소하여 세탁물 수집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기 어려워 감염관리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오물처리실, 폐기물 수집 장소를 구획하여 세탁물 수집 장소를 마련함

· 공간 제약으로 오물 처리 장소와 동일한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칸막이, 커튼, 별도의 장 설치 없이 용도별로 구분 및 관리하는 것도 가능함

– 다만, 이 경우 밀폐가 되는(뚜껑이나 덮개가 있는) 세탁물 수집용기를 사용하여야 함

〈 오물처리실 구성 예시 〉



· 세탁물과 폐기물은 각각의 뚜껑이 있는 용기로 수집하며, 용도별로 구분하도록 함

· 물품 세척, 소독의 경우 오염된 물품의 재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하고, 건조가 완료된 배액용기 등은 보관하면 안됨

· 해당 공간에는 피부 소독제, 세탁완료한 세탁물, 식음료, 세척 소독이 완료된 의료기구, 멸균물품 등은 보관하지 않음

– (개선3) 세탁물 수집 장소에 가벽 및 문을 설치하여 다른 시설과 분리함

· 공간의 구획은 감염예방을 위한 인증기준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업무동선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가벽, 문 제작 시 화재에 취약하지 않은 소재인지 확인 필요함

[사례2] 세탁물 분류방법 게시 미흡

| (문제점) 병동 세탁물 수집 장소에 세탁물의 이름(오염세탁물/기타세탁물)만 표기함
– (개선) 병동 세탁물 수집 장소에 세탁물 분류방법을 추가로 게시함

〈 세탁물 분류 방법 게시 예시 〉



[사례3] 세탁물 수집자루 사용 미흡

| (문제점) 기타세탁물과 오염세탁물 수집 시 의료기관 규정에 명시한 수집자루를 사용하지 않음
– (개선) 규정에 따라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 수집자루를 구분하여 사용 및 보관함

· 수집자루의 재질은 햄퍼, 비닐 등이 적합하며, 수집장(보관함)은 감염관리 측면에서 권고하지 않음
– 세탁물 수집에 적합한 내구성 있는 비닐은 수집용기로 사용 가능함
– 수집장은 보기에 깔끔하지만 문(뚜껑) 등에 불필요한 접촉이 빈번하여 재질에 따라 감염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고, 수집자루 없이 수집할 경우 세탁물을 다시 꺼내는 과정에서 취급자 오염이 발생하게 되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위반사항임

·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을 분리하여 수집하며, 오염세탁물은 별도의 유색 용기 혹은 표식 등이 있는 용기에 수집해야 함

· 기타세탁물과 오염세탁물 수집자루 간에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사항은 규정된 바 없음

〈 세탁물 수집자루의 예시 〉



| (문제점) 세탁물을 수집자루에 수집하지 않고, 세탁물만 단독으로 운반카트에 적재하여 이동함
– (개선) 세탁물은 오염/기타세탁물 전용 수집자루에 수집 후 밀폐(밀봉)하여 세탁물 전용 운반카트에 적재하여 이동함

| (문제점) 세탁물 보관 장소 내 수거카트에 수집자루를 개방한 상태로 보관함
– (개선) 세탁물 수집자루를 밀봉하여 보관함



나. 세탁물 보관

〈 인증기준 내용 〉

구분	세부내용
세탁물 보관	• 세탁물 보관 장소 : 입원실 · 식당 · 휴게실 및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등과 떨어진 구분된 장소 – 오염세탁물의 보관 장소: 오염세탁물 있음을 표시, 취급상 주의사항 게시, 관계자 외 출입금지, 주 2회 이상 소독 등 • 세탁물 보관 방법 – 위탁 처리하는 세탁물 : 수집자루 등 밀폐된 용기 보관 – 세탁이 끝난 세탁물 :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위생적인 장소에 종류별로 정리하여 보관

[사례1] 세탁물 보관 장소 출입통제 관리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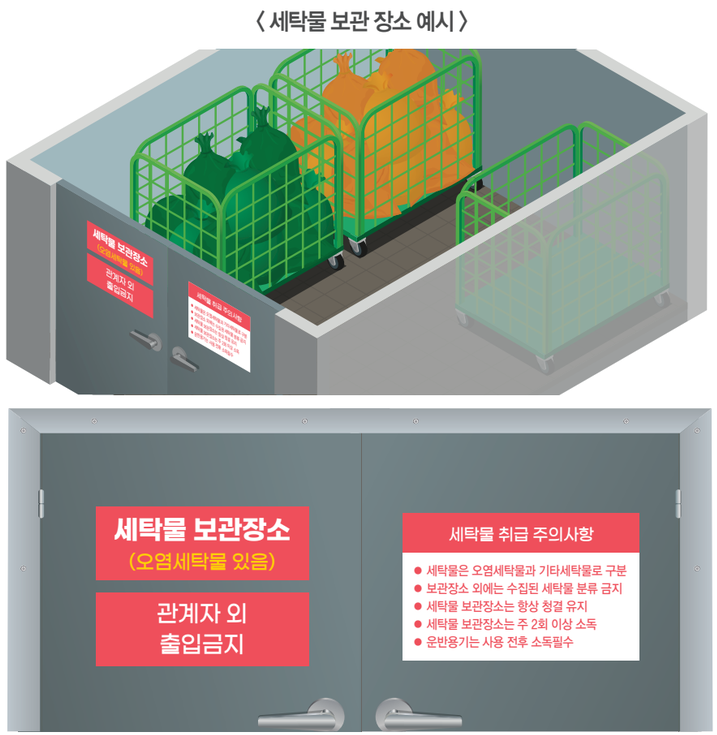
| (개선1) 세탁물 보관 장소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고 출입을 관리함
| (개선2) 세탁물 보관 장소 출입구를 물리적으로 통제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제한함

[사례2] 세탁물 보관 장소 내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미게시

| (개선1) 규정에 맞게 세탁물 보관 장소 내 취급 시 주의사항을 게시하고 직원 교육을 시행함
| (개선2) 세탁물 보관 장소 내 취급 시 주의사항 게시 및 오염세탁물 있음을 표시하고 출입을 관리함

· 세탁물 수집자루가 밀폐되어 있는 경우, 세탁물 보관 장소 내 구획 구분, 카트 구분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님

〈 세탁물 보관 장소 예시 〉



다. 세탁물 운반

〈 세탁물 관리 인증기준 내용 〉

구분	세부내용
세탁물 운반	• 운반 용기 : 위생적인 수집자루 또는 운반 용기 사용, 오염세탁물과 기타 세탁물은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용기에 넣어 운반, 주 1회 이상 소독

[사례1] 세탁물 운반 용기 소독 미흡

| (개선) 의료기관 규정에 따라 세탁물 운반 용기를 주 2회 소독하고 세탁물 보관 장소를 청소하며 소독 관리 점검표에 운반 용기 소독에 관한 항목을 추가함

〈 세탁물 보관 장소 점검표 예시 〉

세탁물 집하장 청소 및 소독 관리 점검표

♣주 2회 소독 (화, 금) 2023 년 9 월

점검 내용 \ 점검 일자	1주		2주		3주		4주		5주	
	9/5(화)	9/8(금)	9/12(화)	9/15(금)	9/19(화)	9/22(금)	9/26(화)	9/29(금)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는가?	○	○	○	○	○	○	○	○		
세탁물이 잘 정리되어있는가?	○	○	○	○	○	○	○	○		
청소상태는 잘되어 있는가?	○	○	○	○	○	○	○	○		
벽면에 낙서 및 이물질 없이 깨끗한가?	○	○	○	○	○	○	○	○		
전구, 형광등이 고장나 있지 않은가?	○	○	○	○	○	○	○	○		
용기가 파손되어 있지 않은가?	○	○	○	○	○	○	○	○		
소독 여부 / (싸이덱스 주 1회이상)	○	○	○	○	○	○	○	○		
세탁물 운반 카트 소독	○	○	○	○	○	○	○	○		
점 검 자										

[사례2] 세탁물 처리시설 내 운반 용기 구분 미흡

| (문제점) 의료기관 내 세탁물 처리시설에서 세탁물 운반 용기를 구분 없이 사용함
– (개선) 세탁물 운반 용기를 세탁 전 · 중 · 후로 구분하여 사용함

·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세탁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작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세탁물 운반 용기는 세탁 전 세탁물 운반용/세탁 완료한 세탁물 운반용으로 구분하여야 함

〈 세탁물 처리시설 내 카트 구분 예시 〉



세탁전 세탁중 세탁완료

라. 세탁이 끝난 세탁물의 관리

[사례1] 세탁이 끝난 세탁물 보관 장소의 환경 관리 미흡

| (문제점) 세탁이 끝난 세탁물 보관 장소에 청결하지 않은 외부 물건이 혼재되어 있음
– (개선1) 세탁이 끝난 세탁물 보관 장소에 청결하지 않은 외부 물건을 세탁이 끝난 세탁물 보관 장소에 청결하지 않은 외부 물건을 정리함.
– (개선2)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별도의 장에 보관하거나 비닐에 담아 보관하고, 그 외 기타물품들을 세탁물과 분리하여 정리함

| (문제점) 세탁이 끝난 세탁물 보관 장소 내부가 천장이 노출되어 있고, 세탁물은 커버 없이 먼지에 노출되어 있음
– (개선) 세탁물 보관이 되어있는 장소는 먼지 유입이 되지 않는 밀폐 구조의 개별실로 개선함

·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곤충, 곰팡이 포자를 일으키는 먼지, 습기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함

· 별도의 세탁물 보관장소의 경우 청결하지 않은 물품을 제거하고 주기적 청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때 커튼의 추가 설치는 요구되지 않음
· 밀폐된 전용 개별실 구조가 불가한 경우, 다른 물건들을 함께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먼지유입이 되지 않도록 세탁물 보관장을 설치하며, 개방 보관장인 경우 비닐포장으로 오염을 예방하도록 함

〈 세탁물 보관 예시 〉



[사례2] 세탁한 수집자루를 위탁처리할 세탁물 보관 장소에 방치

| (개선) 세탁한 수집자루는 각 부서에서 개별 보관하도록 배분하여 병동 내 햄퍼 부족을 방지하고, 청결하게 보관하도록 함

마. 기타

[사례1] 세탁물 구분에 대한 규정 미비

| (개선) 규정에 기타세탁물 언급이 없어 세탁물 관리 규정을 개정, 기타세탁물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

- 의료기관의 세탁물을 모두 오염세탁물로 취급하는 경우 규정에 기타세탁물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직원들의 이해를 위해 기타세탁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 내용에 포함하고, 기타세탁물을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술할 것을 권고함
- 실제 의료기관 현장에서 기타세탁물로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기타세탁물에 관한 내용을 규정에 명시해야 함

[사례2] 세탁물 관리에 관한 직원 숙지 미흡

| (개선) 세탁물 취급 직원 대상으로 세탁물 수거 시 수집자루를 밀폐하여 보관 장소로 운반하고, 운반용기 및 세탁물 보관 장소는 주 2회 소독하도록 재교육함

[사례3] 세탁물 처리업무 직원 교육 미이수

| (개선) 관련 직원이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4시간 수료하도록 함

- 세탁물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세탁물 처리업무 직원' 은 의료기관 직원이 아닌 외부업체 직원의 교육 이수를 의미함

[사례4] 세탁물(직원 근무복) 세탁 미흡

| (문제점) 세탁물관리규칙에 따라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은 의료기관세탁물에 해당하나, 오염된 근무복만 오염세탁물로 처리하고 있음
(개선)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무복의 범위를 정하여, 해당 근무복은 오염세탁물과 기타세탁물로 처리하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절차를 적용함

- 직원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로 규정하는 범위(의료기관이 자체 또는 위탁처리하는 범위)는 의료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단, 특정부서(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에서 진료, 간호, 검체 채취 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근무복은 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의료기관세탁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환자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등에 오염된 근무복은 오염세탁물로 처리하여야 함